

# 생산물 배상책임공제

(공제조합용)

본 약관에 열거된 내용은 해당 상품에 담겨있는 전체내용이며, 기변 계약에서 보장하는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은 해당 계약 공제증권에 명기된 약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가입자 유의사항

#### 1. 공제계약관련 유의사항

- 공제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mark>공제설계사</mark>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 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 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상해 및 질병 관련 보장
  - 이 공제가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공제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공제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공제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조합 및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합 및 보험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합 및 보험회사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공제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 이 있을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공제계약자와 피공제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 청약철회

계약자는 공제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경우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 공제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



#### 3. 계약취소

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 공제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4.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은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립니다.

- 가) 신체보장 관련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공제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공제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단체공제의 공제수익자를 피 공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 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 의 규약에 따라 단체공제의 피공제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



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공제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나) 재물손해 배상책임 보장 관련
  - 계약을 맺을 때에 공제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5. 계약의 소멸

이 공제계약은 피공제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6. 공제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자가 제2회 이후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공제료 납입연체로 공제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공제료의 환급 조항에 따라 공제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공제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제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조합 및 보험회사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8. 계약전 · 후 알릴 의무

- 가) 계약전 알릴의무 : 공제계약자, 피공제자는 공제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 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 나) 계약후 알릴의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조합에 알리고 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상해공제

- 피공제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등

#### 2) 배상책임공제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을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3) 화재공제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양도할 때
- 공제의 목적 또는 공제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 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공제의 목적 또는 공제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다른 곳으로 옮길 때
-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9.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조합 및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10. 공제금의 지급

공제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 해에 관한 공제금은 3 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공제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추정한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공제용어 해설

공제약관			공제계약에 관하여 공제계약자와 조합 및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공제증권			공제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조합이 공제계약자에 게 교부하는 증서
공제계약 당사자	보험(공제)회사		보험(공제)사고 발생시 공제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공 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공제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공제계약 관계자	신체손해· 비용손해 보상	피공제자	공제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공제수익자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대리인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사람
	재물손해· 배상책임 보장	피공제자	공제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공제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대리인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공제료			공제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공제계약자가 조합 및 보험회사 에 납입하는 공제료
공제목적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공제가액		공제목적	공제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공제가액	재산공제에 있어 피공제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공제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보험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공제금은 공 제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제가입금액			공제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공제금의 기준이 되는 금 액으로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
신체손해·비용손해 보장			피공제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 험회사가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공제금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공제금	피공제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공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환급공제료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시 공제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공제기간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공제증권에 기 재된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공제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공제계약일			계약자와 조합과의 공제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주요민원사항

#### 1. 재물손해 배상책임 보장

#### 가. 비례보상 관련

#### 1) 사례

A씨는 본인 소유의 주택을 화재공제에 가입하던 당시, 취급자로부터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을 첨부할 경우 사고발생시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처리 받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요율인 상은 없다는 안내를 해당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계약 체결함. 얼마 후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청구 접수하자, 피해목적물의 실제 재조달금액에 한참 미달하는 공제금을 지급받게 되어 불만을 제기함

#### 2) 유의(참고) 사항

화재공제는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공제가액'(시가)을 기준으로 보상처리함. 단,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을 첨부할 경우 재조달가액(피해 목적물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처리되며, 이는 보상처리의 기준이 변경되는 것일 뿐 이로 인한 위험의 증가가 없으므로 율의 인상은 없음.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일부보험에 의한 비례보상 원칙은 변함이 없으므로, 보상처리의 기준인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공제가입금액을 설정하여야 하며, 주택물건의 경우 약관상 80% 부보비율 충족시 이를 전부보험으로 보므로 해당 목적물 재조달가액의 80% 이상을 공제가입금액으로 설정하여야 함

#### 나.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적용제외에 따른 환급공제료 관련

#### 1) 사례

A씨는 연말에 이르러, 연초에 가입한 화재공제의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의 적용제외 배서를 요 청하였으나 환급공제료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불만 제기함

#### 2) 유의(참고) 사항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을 공제기간 중 적용제외할 경우의 환급공제료는, 요율서상 명시된 단기 요율이 적용되어 산출되며, 특히 태풍으로 인한 풍수재사고발생 위험이 집중된 7월, 8월, 9월에 대하여는 각 월에 대하여 10%씩 가산하여 적용하므로 이 기간이 경과한 계약의 풍수재위험담보에 대한 환급공제료는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2. 신체손해 비용손해 보상

#### 가. 상해공제 면책사항 관련

#### 1) 사례

전문등반을 취미로 하고 있는 A씨는 주로 활동하고 있는 산악동호회 회원들과 설악산 암벽등반을 하던중 추락하여 척추의 장해가 발생하였지만 보험회사는 보통약관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상해 후유장해 공제금 지급을 거부함

#### 2) 유의(참고) 사항

상해공제 보통약관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는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선박승무원 등 위험이 큰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하는 중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함

특수운동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특수운전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등 해당 위험을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해당 위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나.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 공제 관련

#### 1) 사례

A씨는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당해 <mark>통원</mark>치료 후 병원 외래진료비 및 약국 처방조제비를 실손의료공제를 가입한 공제사에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실손의료비 청구금액과 지급공제금이 달라 불만 제기

#### 2) 유의(참고) 사항

약관에 의거하여 통원의료비의 경우 요양기관의 분류에 따라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공제후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가입한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 공 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

# 다. 여행공제 가입 후 고가의 물품을 도난당한 경우 보상한도

#### 1) 사례

A씨는 신혼여행중 구입한 목걸이를 분실한 사고를 당하여, 현지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여 '도난 증명서'를 발급받고 귀국후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물품 1개당 20만원만 보상이 가능함을 알고 불만제기

#### 2) 유의(참고) 사항

일반적인 여행공제 상품은 해당 물품의 본래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물품 한 개당 보상한도를 20만원까지만 제공하므로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 라. 여행공제 가입 후 물품을 분실한 경우 보상여부

#### 1) 사례

B씨는 1달간의 유럽여행중 관광지에서 화장실에 들러 세면을 하면서 시계를 풀어 놓고 다음 관광지로 이동하여 시계를 분실, 이에 귀국하여 시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로부터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불만 제기

#### 2) 유의(참고) 사항

대부분의 여행공제 상품은 '분실'이 아닌 '도난' 또는 '파손'에 의한 물품 손해만 보상하고 있으므로 '분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받지 못함.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으려면 반드시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난 증명서(Police Report)'를 발급받아 귀국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함

#### 마. 골프장 이외의 장소에서 골프용품을 도난 당한 경우 보상여부

#### 1) 사례

8

A씨는 평소 골프를 즐겨 골프장 내에서의 사고를 담보하는 골프보험을 가입하였고, 아파트 주차 장내에서 차량 트렁크안에 보관하던 골프채를 도난 당한 사실을 알고 골프보험을 가입한 보험회 사에 공제금 청구를 하였으나, 골프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불만 제기

#### 2) 유의(참고) 사항

골프보험의 경우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외 부속시설을 포함)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중 손해만 보상하고 있으므로 골프시설 이외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받지 못함. 보통약관에 정한 골프용품 손해 외에 골프장 구내에 위탁보관 중 또는 골프장 구내 밖의 장소에서 입은 골프용품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골프용품손해 확장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여야함.

이 주요민원 사항은 통상적인 민원사항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공제금 지금 관련 주의사항 안내

○ 공제금 지급절차 안내

#### 사고접수

 유선접수: 영업담당자 고객센터 (ARS 1566-8000)
 방문접수: 금융플라자, 고객지원센터

#### 접수내용 및 진행사항안내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부책의 경우 : 보험금 지급 안내 면책의 경우 : 부지급 사유 안내

####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이해관계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 (단,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위임장 제출시 대리인 계좌 가능)

- 공제금 청구 소멸시효
  - 공제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 공제금 지급심사 위탁
  -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공제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공제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 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 니다.
- (공제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이 공제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고객상담센터(1566-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www.fss.or.kr)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생산물배상책임공제(공제조합용) 보통약관

# 생산물배상책임공제(공제조합용) 보통약관(손해사고기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목적)

이 공제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공제조합 '조합'이라 합니다) 사이에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공제자: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다. 공제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조합이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2. 보상 관련 용어
  - 가. 배상책임: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나. 보상한도액: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보험회 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 다. 자기부담금: 공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라. 공제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 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마. 대위권: 보험회사가 공제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3.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100원(원금)+100원×10%(1년차 이자)+[100원+100원×10%]×10%(2년차 이자)

= 총121원

-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 시하는 이율로써 보험회사가 공제금의 지급 또는 조합이 공제료의 환급을 지연 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공제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조합 및 보험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제2관 공제금의 지급

# 제3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내에서 이 약관과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따라 피공제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공제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공제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공제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할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공제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공제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공제자가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제기되는 아래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4. 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6.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7. 피공제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청구 및 오염제거비용
- 8.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mark>재물</mark>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 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청구
- 10.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에 대한 배상청구.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청구는 보상합니다.
- 11. 생산물 및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청 구
- 12.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13. 아래로 인한 배상청구
  - 가. 「피공제자의 생산물」또는 그 일부로 인하여 「피공제자의 생산물 그 자체」에 끼친「재물손해」
  - 나. 「피공제자의 작업」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피공제자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해」
  - 다. 「손상재물」또는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에 생긴 재물손해로서 아래 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용불능 상태이거나 사용가치가 하락한 경우
    - (1) 「피공제자의 생산물」의 결함, 불완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 (2)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피공제자의 생산물이 그 의도, 보증 또는 설계된 대로



의 효능이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계약상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 후에 피공 제자의 생산물이 급격하고 우연하게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다른 재물이 입은 사용손실은 보상합니다.

- 14.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15.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청구
- 16.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1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조합 및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 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 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상법657조 제1항에 의해 공제사고의 발생을 조합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 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6조(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공제금 청구서(보험회사 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조합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제7조(공제금의 지급절차)

① 보험회사는 제6조(공제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



고, 그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추정한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공제금】공제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예상되는 공제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공제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보험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의 지급공제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늦어진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부표]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 제8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 ① 보험회사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 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총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 한도로 합니다.

#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조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공제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공제자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 제10조(공제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피공제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 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공제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11조(손해방지의무)

-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 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 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



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 비용과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지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 제12조(소송비용,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보험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해결에 앞서 미리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2의 다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공제자는 보험회사가 기지급한 방어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한도로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회사의 해결)

-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14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보험회사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 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이나 가지급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조합의 요청



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회사가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제15조(대위권)

- ① 보험회사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mark>받을</mark>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 제17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조합에 알리고 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조합이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조합이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제17조2(양도)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보험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조합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조합 및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4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9조(공제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료 전액 또는 제1회 공제료(이하 '제1회 공제료 등' 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조합이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공제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공제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공제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공제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공제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 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조합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조합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공제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조합이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제2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조합은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조합이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조합은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공제료납입, 공제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 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조합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22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조합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조합이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조합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조합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공제종목
  - 2. 공제기간
  - 3. 공제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4. 계약자, 피공제자



- 5. 보상한도액, 공제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조합은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 서 그 공제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조합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조합은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4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공제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제24조(조사)

- ① 보험회사는 공제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공제기간 중 또는 조합에 서 정한 공제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25조(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5관 공제료의 납입

# 제26조(제1회 공제료 등 및 보험회사의 보장개시)

- ① 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합니다.
- ② 조합이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



- 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상의 보 장을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조합에 알 린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2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1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험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④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계좌이체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 제27조(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제28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조합은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 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 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 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납입최고】약정된 기일까지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조합이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 조합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합은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9조(공제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28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4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이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조합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조(공제계약의 성립), 제26조(제1회 공제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1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조합은 해지전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1조(계약의 해지) 제3항이 적용됩니다.

# 제30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4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조합은 해지 당시의 피공제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이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조합에게 지급하고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공제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공제계약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지 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③ 조합은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공제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됩니다.
- ④ 피공제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공제료의 환급 등

# 제31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조합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7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조합이 계약 할 때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조합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공제을 모집한 자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 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공제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합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조합은 다른 공제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조합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조합은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조합은 제34조(공제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공제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조합은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3조(조합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조합이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조합이 제34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4조(공제료의 환급)

-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조합에 납입한 공제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료
  -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공제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2. 조합이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1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 3. 공제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조합이 돌려드려야 할 공제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합은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 제35조(분쟁의 조정)

-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조합 및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및 보험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제3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조합 및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37조(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공제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제38조(약관의 해석)

- ① 조합 및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조합 및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조합 및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39조(설명서 교부 및 공제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조합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공제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 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



- 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공제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조합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공제를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보험회사 제작의 공제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공제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 제40조(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조합은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공제를 모집한 자 등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보험회사는 공제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보험회사가 공제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보험회사가 공제수익자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 유사 사례에 비추어 공제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41조(개인정보보호)

- ① 조합 및 보험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 및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따라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 및 공제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조합 및 보험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42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제43조(예금공제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공제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공제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공제계약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공제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공제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본 공제회사 보호상품의 사고공제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단, 공제계약자 및 공제료납부자가 법인인 공제계약은 제외)

# 생산물배상책임공제(공제조합용) 보통약관(배상청구기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목적)

이 공제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공제조합 (이하 '조합'이라 합니다) 사이에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공제자: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다. 공제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조합이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2. 보상 관련 용어
  - 가. 배상책임: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나. 보상한도액: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중 제9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 다. 자기부담금: 공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라. 공제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 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마. 대위권: 보험회사가 공제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3.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조합 및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100원(원금)+100원×10%(1년차 이자)+[100원+100원×10%]×10%(2년차 이자)

= 총121원

-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 시하는 이율로써 보험회사가 공제금의 지급 또는 조합의 공제료의 환급을 지연 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공제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조합 및 보험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제2관 공제금의 지급

#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 보험회사는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공제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공제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로 공제기간 중에 피공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공제증권상에 소급보장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공제자가 제12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공제자가 제12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이하 "방어비용"이라 합니다)
  - 라.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공제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공제자가 제14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② 보험회사는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4조(손해배상 청구일자)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1. 피공제자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 는 한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 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 2. 어느 하나의 사고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

#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제기되는 아래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4.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6.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7. 피공제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청구 및 오염제거비용
- 8.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 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청구.
- 10.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청구는 보상합니다.
- 11. 생산물 및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청 구.
- 12.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13. 아래로 인한 배상청구
  - 가. 「피공제자의 생산물」 또는 그 일부로 인하여「피공제자의 생산물 그 자체」에 끼친「재물손해」
  - 나.「피공제자의 작업」 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 「피공제자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해」
  - 다. 「손상재물」 또는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에 생긴 재물손해로서 아래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용불능 상태이거나 사용가치가 하락한 경우
    - (1) 「피공제자의 생산물」의 결함, 불완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 (2)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피공제자의 생산물이 그 의도, 보증 또는 설계된 대로 의 효능이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계약상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 후에 피공 제자의 생산물이 급격하고 우연하게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다른 재물이 입은 사용손실은 보상합니다.
- 14.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15.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청구
- 16.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상법657조 제1항에 의해 공제사고의 발생을 조합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7조(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공제금 청구서(보험회사 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제8조(공제금의 지급절차)

① 보험회사는 제7조(공제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추정한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공제금】공제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예상되는 공제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공제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의 지급공제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부표]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늦어진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부표]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 제9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 ① 보험회사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 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총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 한도로 합니다.

#### 제10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조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1조(공제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 제11조(공제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피공제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 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공제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제1항 에 의한 지급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12조(손해방지의무)

-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 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 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 비용과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 제13조(소송비용,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① 보험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해결에 앞서 미리 제3조(보 상하는 손해)의 제2호 다목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공제자는 보험회사 가 기지급한 방어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 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한도로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피공제자는 미리 보험회사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거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제14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회사의 해결)

-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15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보험회사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 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 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이나 가지급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제16조(대위권)

- ① 보험회사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 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제17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설정 대상계약)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제19조(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드리며, 추가 공제료를 납입하면 제20조(선택보고연장보장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 연장배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1. 공제료 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공제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 2. 보험회사가 이 공제를 배상청구 기준으로서 이 공제증권상의 소급보장일이자 이후 의 날짜를 소급보장일자로 하는 공제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 3. 보험회사가 이 공제증권을 배상청구 기준이 아닌 공제로 대체했을 경우

### 제18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보상 특칙)

보험회사가 보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다음의 조항을 추가 적용합니다.

- 1. 보고연장기간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공제기간 만료일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급보장일자와 공제기간 만료일 사이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에 한합니다.
- 2. 보고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공제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19조(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

① 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이라 함은 아래의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습니다.



- 1. 공제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간.
- 2. 공제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이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은 공제증권상의 소급보 장일자부터 공제기간 만료일 이후 60일이내의 기간 동안에 회사에 통지된 행위 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자동보고연장 보장기간은 그 손해배상 청구를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 른 공제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피공제자가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에 사고를 통지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제6조(손해의통지 및 조사) 제1항의 내용에 준용하여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이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제20조(선택보고연장보장기간)

- ① 선택적인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가 발행된 경우 그 보고연장보장기간은 이 공제기 간 만료일로부터 무기한이 됩니다. 그러나,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보험회사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아래의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를 발행합니다.
  - 1. 보험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공제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2. 소정의 납입기일에 추가공제료를 납<mark>입하여야 합니다. 납입기일까지 추가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공 제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었을 때에는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mark>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21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제22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조합에 알리고 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조합이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제22조2(양도)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보험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조합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제23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조합 및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4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24조(공제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료 전액 또는 제1회 공제료(이하 '제1회 공제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조합이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공제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공제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25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공제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공제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공제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공제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 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조합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조합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공제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조합이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제2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조합은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조합이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조합은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공제료납입, 공제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 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조합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27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조합이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조합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2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조합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공제종목
  - 2. 공제기간
  - 3. 공제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4. 계약자, 피공제자
  - 5. 보상한도액, 공제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조합은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 서 그 공제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조합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조합은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40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 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공제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제29조(조사)

- ① 보험회사는 공제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공제기간 중 또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공제금 청구서류를 접수한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30조(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5관 공제료의 납입

### 제31조(공제료)

이 공제증권에 확정공제료로 기재된 공제료는 공제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정산하지 않으며, 예치공제료로 기재된 공제료는 공제기간 종료 후 공제료정산 특별약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제32조(제1회 공제료 등 및 보험회사의 보장개시)

- ① 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합니다.
- ② 조합이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



- 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상의 보 장을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21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조합에 알린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7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7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험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④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계좌이체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 제33조(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제34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조합은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 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 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 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납입최고】약정된 기일까지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조합이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 조합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합은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0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5조(공제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34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 40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이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조합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2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3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4조(공제계약의 성립), 제32조(제1회 공제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7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조합은 해지전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21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7조(계약의 해지) 제3항이 적용됩니다.

#### 제3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40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조합은 해지 당시의 피공제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이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조합에게 지급하고 제2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공제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공제계약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③ 조합은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공제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됩니다.
- ④ 피공제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공제료의 환급 등

# 제37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조합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2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22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조합이 계약 할 때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조합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공제를 모집한 자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 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공제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합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조합은 다른 공제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제37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조합은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조합은 제40조(공제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3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공제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0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9조(조합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조합이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조합이 제40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0조(공제료의 환급)

-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조합에 납입한 공제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료
  -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공제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2. 조합이 제23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7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 3. 공제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조합이 돌려드려야 할 공제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합은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 제41조(분쟁의 조정)

-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조합 및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및 보험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제4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조합 및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43조(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mark>구권</mark>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공제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제44조(약관의 해석)

- ① 조합 및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조합 및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조합 및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45조(설명서 교부 및 공제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조합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공제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 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



- 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공제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조합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공제를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보험회사 제작의 공제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공제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 제46조(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조합은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공제를 모집한 자 등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 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보험회사는 공제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보험회사가 공제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보험회사가 공제수익자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 유사 사례에 비추어 공제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47조(개인정보보호)

- ① 조합 및 보험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 및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 및 공제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조합 및 보험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48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제4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공제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공제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공제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공제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단, 공제계약자 및 공제료납부자가 법인인 공제계약은 제외)

# ※ 용어의 정의

# 생산물 「생산물」이란 피공제자가 제조, 가공 또는 공급한 생산물 및 시공한 작업(이하 「완성작업」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 아래의 경우는 「생산물」에서 제외합니다. (1) 피공제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생산물 (2)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방치된 작업 2. 아래 시기 중 먼저 도래한 때를 「피공제자의 작업」이 완성된 것으로 봅니 다. (1) 피공제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2) 피공제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여러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어느 한 장소에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만,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합니다. (3) 동일 작업장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다른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 이외에 개 인 또는 단체가 작업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검장비, 보수관리, 조정,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성된 작업으로 간주합니다. 손상재물 「손상재물」이란 아래의 (1)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효용성은 감소하지만 아래 (2)의 조치에 의해 원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유체물로서 피공제자의 생산물 또는 피공제자의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합니다. (1) ① 해당 재물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피공제자의 작업의 결함, 불완전, 부적합 또는 위험 ② 피공제자의 계약상 조건에 대한 불이행 (2) ① 피공제자의 생산물 또는 피공제자의 작업의 수리, 대체, 조정, 또는 제거 ② 피공제자의 계약상 조건에 대한 이행 법률상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말합니다. 단, 세금.벌금.과태료.과징 손해배상금



	금.징벌적 손해배상금, 배액배상금(이에 유사한 것을 포함합니다) 및 피공제자와 타인과의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서 가중된 손해배상금 (계약상의 가중책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보장지역	보장지역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대한민국 【2】아래의 경우에는 전세계 피공제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한 제품으로 인한 손해. 다만, 대한 민국외의 지역에서 판매, 재판매되어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합니다.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 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공해물질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중기, 매연, 연무, 산, 알칼리, 화학물질,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 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테러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합니다.



### 생산물배상책임공제(공제조합용) 특별약관

## 공통적용 특별약관

# 공제료 정산 특별약관(Ⅲ)

### 제1조(적용범위)

조합은 아래의 사유로 공제가입시점에서 직전 회계년도 연간매출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매출액)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 예치공제료를 적용하며, 예치공제료를 적용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제기간 종료 후 공제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 1. 신규사업으로서 과거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
- 2. 최근 3개년 동안의 매출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 3. 최근 3개년 동안 한해라도 매출액 변동이 20%이상인 경우

# 제2조(정산의 방법)

조합은 공제기간 종료 후 아래와 같이 공제료를 정산합니다.

- 1. 계약자는 공제계약이 끝난 후 공제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조합은 공제기간 중이나 계약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공제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3. 조합은 위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공제료(이하 "정산공제료"라 합니다)와 예치공제료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줍니다.
  - 가. 정산공제료가 예치공제료보다 많을 경우 : 정산공제료와 예치공제료의 차액을 받습니다.
  - 나. 정산공제료가 예치공제료보다 적을 경우 : 예치공제료와 정산공제료의 차액을 돌려줍니다.

여가여	상매출액	•
Ľ Ľ *I		•

예치공제료 :

# 공제료 분납 특별약관(I)

# 제1조(공제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공제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의 공제료를 ()회에 분할하여 회사에 냅니다.



### 제2조(분할공제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에 제1회 분할공제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공제료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 공제료의 % 해당액)

제2회: 청약일후 5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공제료의 % 해당액)

2. 4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 공제료의 % 해당액)

제2회: 청약일후 2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공제료의 % 해당액)

제3회: 청약일후 5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공제료의 % 해당액)

제4회: 청약일후 8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공제료의 % 해당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분할공제료를 아래와 같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분납 : 제 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공제료의 % 해당액)

제 2 회 : 년 월 일(총 공제료의 % 해당액)

2. 4회분납 : 제 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공제료의 % 해당액)

제 2 회 : 년 월 일(총 공제료의 % 해당액)

제 3 회 : 년 월 일(총 공제료의 % 해당액)

제 4 회 : 년 월 일(총 공제료의 % 해당액)

③ 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 제2항의 분할공제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의 경우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3조(분할공제료의 공제)

보험회사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될 공제금이 이미 납부한 공제료보다 많을 때에는 미납입된 공제료 전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공제료 분납 특별약관(Ⅱ)

#### 제1조(공제료의 납입)

-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공제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 공제 계약에 대하여 공제료를 제2항에 정한 바에따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이 공제의 공제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분납공제료를 해당 공제기간에 따라 제2회 이후 분납공제료부터 공제기간 및 분할회수에 따라 아래에 정한 시기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공제기간		제2회 이후 분납공제료 납입시기
6세기신	분할회수	제2회 이후 분납공제료
	2회	제1회 분납공제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의 공제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공제료를 납입
1년	4호	제1회 분납공제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개월마다 공제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공제료를 납입
	12회	제1회 분납공제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1개월마다 공제증권에 기재된 납입기 일 안에 분납공제료를 납입
2년	24회	제1회 분납공제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1개월마다 공제증권에 기재된 납입기 일 안에 분납공제료를 납입
3년	36회	제1회 분납공제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1개월마다 공제증권에 기재된 납입기 일 안에 분납공제료를 납입

③ 공제기간동안 이 계약의 공제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분납공제료는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손해담보조항의 '계약후 알릴의무'에 따라 공제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화율 특별약관

- ① 조합은 공제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하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 1. 공제료 : 청약일
  - 2. 추가 및 환급공제료 : 배서일
  - 3. 해지환급공제료 : 해지일
  - 4. 분납공제료 : 납입해당일
- ② 공제금은 지급일의 하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공동인수 특별약관

# 제1조(책임의 분담)

이 공제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 ) 주식회사가 발행하여 각 보험회사는 아래 또는 공제증권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특별약관

### 제1조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규정에 불구하고, 피공제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2조

보험회사는 위와 관련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3조

보험회사는 상기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4조

상기 제 1, 2, 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 된 경우에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정보기술 특별약관(사이버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이 공제증권에서 보장되는 재물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습니다.

- 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보장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장됩니다.
-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 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 전염병 배상책임 보상제외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손해사고기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보통약관(배상청구기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염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용어정의>

전염병은 전염병예방법과 검역법에 의해 분류된 아래 표에 기재된 병으로 한정합니다.

### (표) 전염병의 기준별 분류

분류기준	분류	병명
전염병 예방법과	제1그 저여벼(6)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
검역법에 의한	세1군 신엄당(6)	글네니, 뻬ㅡㅡ, ᆼ니ㅜㅡ, 픠니니ㅜㅡ, 세판영어글, 엉울걸엉네엉 



분류		균감염증(O157)
	제1군 전염병(9)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제1군 전염병(18)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
		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
		스파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
		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본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제1조(용어의 정의)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보험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 ② 제1조(용어의 정의) 제1호, 제2호 이외에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 제3조(예외규정)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請約)과 공제조합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공제계약자는 "계약자", 공제조합은 "조합" 이라 합니다)
- ② 제1조(적용대상)의 공제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제금의 청구대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공제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여야 합니다.
  - 1. 피공제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공제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공제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조합은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조합양식)
- 2. 공제증권
-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제5조(공제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조합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공제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제금(사망공제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청구대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공제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공제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청구대리인도 공제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가 공제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공제금 청구를 받더라도 보험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6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보험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공제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Claims Co-operation Clause (NMA2737)\_공제사고 협조조항

보험회사는 이 공제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관계없이 동 공제증권상 아래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a) 피공제자는 담보 목적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제사고 또는 그러한 공제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인지된 상황이 있을 경우 즉시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b) 피공제자는 조합 및 보험회사에 공제사고 또는 사고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인지하고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c) 피공제자는 공제자에게 통보된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지정한 손해조사인과 조사 및 사정업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 단체계약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 ① 피공제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공제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 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3. 제3종 단체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공제자로 피공제단체를 구성하여야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공제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공제조 합이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가 피공제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



-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공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공제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약은 공제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공제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제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공제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③ 공제조합은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공제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제4조(공제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조합에 알리고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② 이 계약기간 중 공제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공제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공제의 목적의 공제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공제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공제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③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공제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드리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공제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공제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공제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공제기간(공제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공제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 ① 피공제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공제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조합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공제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공제자의 공제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공제료는 공제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제6조(공제증권의 발급)

- ① 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증권를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② 공제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공제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공제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단체계약 공제료 정산 특별약관

#### 제1조(공제료 정산)

- ① 조합은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공제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공제료를 정산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공제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과 관계없이 공제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공제의 목적 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피공제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공제자 명부를 비치하여 조합 및 보험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제3조(공제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매월, 매6개월 또는 기타 조합이 승인한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공제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기간을 공제료 정산기간(이하「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합니다.



### 제4조(예치공제료)

계약자는 제3조(공제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 동안의 예상 공제의 목적에 대하여 공제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제료(이하"예치공제료"라 합니다)를 조합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5조(공제료의 정산방법)

공제료는 피공제자 정보의 변경, 매출액 변동, 공제의 목적의 증감 등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1. 계약자는 정산기간 만료 후 익월 10일(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기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공제자 정보의 변경, 매출액 변동, 공제의 목적 등에 관한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 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공제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조합은 공제기간중이나 공제기간 만료 후 공제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3. 조합은 제1호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공제료를 산출한 후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공제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공제 정보의 변경, 매출액 변동, 공제의 목적 등에 관한 서류 제출시기는 계약자와 별도로 혐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공제기간 설정 추가 특별약관

#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 특별약관은 계약기간중 피공제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공제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공제자의 공제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공제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공제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린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공제자의 공제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제2조(공제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공제자의 공제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제3조(공제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공제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새로이 증가된 피공제자의 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공제 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전염병/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본 (재)공제 또는 본 (재)공제에서 발생한 배서 상에 반대되는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여타의 유기체와 그 변종 등을 포함하는 유행병 (epidemic), 세계적 유행병(pandemic), 또는 공기중으로 전파되거나 접촉으로 인해 발병되는 감염병(infectious or contagious disease)의 실제 발생, 인지, 공포가 직간접적인원인이 되거나, 그로부터 유발되었거나, 그 결과로 발생하였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성질(nature)의 손실, 피해, 비용(cost)또는 경비(expense)는, 해당 손실에 대해 어떠한 다른 원인 또는 사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혹은 어떠한 순서를 두고 원인을 제공하였는지여부와 관계없이, (재)공제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러한 유행병(epidemic), 세계적 유행병(pandemic), 또는 감염병에 대한 통제, 모니터, 방지, 억제, 회복을 목적으로한 어떠한 조치의 이행이나 그 이행의 실패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그로부터 유발되었거나, 귀결되었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성질(nature)의 손실, 피해, 비용(cost) 또는 경비(expense)는 (재)공제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 [LMA5399] 감염병 면책 조항

1. 본 (재)공제 계약상 반대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출재)공제사에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재)공제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 2. 본 계약서상에서 사용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는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2.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 함
  - 2.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 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 2.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이하의 국문은 위 영문 원본을 이해를 돕기 위한 번역본입니다. 영문본(원본)과 국문본 (번역본) 사이에 여하한 상이점이 있을 경우, 언제나 영문본이 우선하며, 오로지 영문본 만이 분쟁 발생시 당사자 사이의 유일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됩니다.

# 생산물배상책임공제(공제조합용) 특별약관(손해사고기준)

### 전기공급차질 보상제외 추가약관

####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약관은 전기 유지·보수작업을 보장위험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정전 등 전기공급차질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품질저하부담보 특별약관

# 제1조(적용범위)

- 이 특약조항은 생산물배상책임공제(공제조합용)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 의 생산물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1. 약사법 제2조(정의)에 규정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또는 의료용구
- 2. 농약관리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농약
- 3.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식품
- 4.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화장품 또는 기능성화장품
- 5. 비료관리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비료 또는 부산물비료
- 6.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사료, 단미사료, 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생산물이 그 의도, 보증 또는 설계된 대로의 효능이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도급업자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공제(공제조합용)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 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공제증권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시설이라 합니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자



- 가 소유, 임차한 시설의 관리, 수리 또는 그 시설 내에서 피공제자의 하도급업자가 수행하는 시설의 규모변경이나 이전이 아닌 구조변경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은 보 상하여 드립니다.
- 2. 피공제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공제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피공제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하도급 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4.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 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공제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공제자 소유가 아닌 소형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피공제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6.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 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작업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 구성의 결함
- 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 8.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 9.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1.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가뜨림과 지하수의 증감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3.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4.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5. 피공제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전체작업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내용	명칭 :
	소재 :
	구조 및 용도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작업내용	





# 운송위험담보 추가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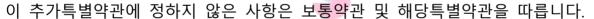
보험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상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피공제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보상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은 손해)

보험회사는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적재된 화물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 2.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자동차 사고에 수반되어 적재화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 추가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의 제11호, 제12호, 제1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가뜨림과 지하수의 증감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하매설물 자체에 입힌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도급업자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의 도급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공제증권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그에 대한 피공제자의 감독 부주의로 인한 배상책임생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공제기간의 연장)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내에 작업이 끝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작업이 끝나지 않은 이유 및 종료예정일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조합에 통지함으로써 공제기간은 작업이 끝나거나 폐기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통지를 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또는 회사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내용	명칭 : 소재 : 구조 및 용도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작업내용	

### 판매인 특별약관

### 제1조(추가피공제자)

보험회사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판매인 등도 피공제자로 봅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은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판매인등이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공제자가 승인하지 않은 보증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판매인등이 생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형태를 변경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생산물을 재포장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부품을 검사, 전시, 시험 또는 대체하기 위하여 포장을 벗긴 후에 원래의 용기에 재포장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4. 생산물의 전시, 설치 또는 수리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판매인 구내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물을 전시, 설치 또는 수리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5. 판매인등이 생산물을 공급, 판매하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상 수행하여야 하는 검사, 조정, 시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6. 판매인등이 생산물에 상표를 붙이든지 바꾸거나 생산물을 다른 물건의 용기, 부품 또는 성분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판매인등이 생산물이나 그 생산물의 성분, 부품 또는 생산물의 용기를 구입한 사람 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생산물명 :

판매인 등의 성명 :

주소 :



#### 인증기관 마크계약 특별약관

#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인증기관의 확인, 검사, 보증이 부여된 생산물만을 공제가입조건으로 하는 공제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이 약관상의 인증기관이라 함은 정부기관의 승인을 득한 기관에 한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은 손해)

보험회사는 손해의 원인을 불문하고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생산물로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인격침해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공제(공제조합용)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 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우 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또는 무고
- 2. 출판물이나 구두 기타비방수단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
- 3.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 점유권의 침해

#### 제2조(보상하지 않은 손해)

보험회사는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2.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피공제자가 행하거나, 알고 있거나 동의하에 형사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인격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입은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보장개시일 이전에 행하여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 6. 피공제자가 거짓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광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으로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완성품의 제조업자, 부품 또는 중간재 등의 제조업자를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교차책임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증권의 공동피공제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공제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공제자가 제조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보장 대상은 피공제자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1. "제조물"이란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것으로써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 2. "제조물"은 피공제자가 시공한 작업(완성작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호 및 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않은 결과로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공제자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제조물을 공급한 경우.
- 2. 공제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단, 피공제자가 파산하여 피해자 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보상합니다.

#### 제4조(보장지역)

이 특별약관은 공제사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생산물배상책임공제(공제조합용) 특별약관(배상청구기준)

## 전기공급차질 보상제외 추가약관

#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약관은 전기 유지·보수작업을 보장위험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정전 등 전기공급차질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품질저하부담보 특별약관

# 제1조(적용범위)

- 이 특약조항은 생산물배상책임공제(공제조합용)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의 생산물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1. 약사법 제2조(정의)에 규정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또는 의료용구
- 2. 농약관리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농약
- 3.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식품
- 4.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화장품 또는 기능성화장품
- 5. 비료관리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비료 또는 부산물비료
- 6.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사료, 단미사료, 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생산물이 그 의도, 보증 또는 설계된 대로의 효능이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도급업자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공제증권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 자가 소유, 임차한 시설의 관리, 수리 또는 그 시설 내에서 피공제자의 하도급업자가 수행하는 시설의 규모변경이나 이전이 아닌 구조변경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피공제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공제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피공제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하도급 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4.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 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공제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공제자소유가 아닌 소형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피공제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6.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 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작업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



구성의 결함

- 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 8.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 9.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1.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가뜨림과 지하수의 증감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3.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4.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5. 피공제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전체작업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내용	명칭 : 소재 :
	구조 및 용도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작업내용	



## 운송위험담보 추가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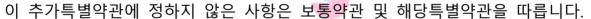
보험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상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피공제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보상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적재된 화물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 2.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자동차 사고에 수반되어 적재화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 추가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의 제11호, 제12호, 제1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가뜨림과 지하수의 증감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하매설물 자체에 입힌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 자의 수급업자가 공제증권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그에 대한 피공제자의 감독 부주의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공제기간의 연장)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내 에 작업이 끝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작업이 끝나지 않은 이유 및 종료예정일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조합에 통지함으로써 공제기간은 작업이 끝나거나 폐기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통지를 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또는 조합에 다른 의사표시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내용	명칭 :
	소재 :
	구조 및 용도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작업내용	

#### 판매인 특별약관

#### 제1조(추가피공제자)

보험회사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판매인 등도 피공제자로 봅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판매인 등이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공제자가 승인하지 않은 보증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판매인 등이 생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형태를 변경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생산물을 재포장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



라 오로지 부품을 검사, 전시, 시험 또는 대체하기 위하여 포장을 벗긴 후에 원래의 용기에 재 포장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4. 생산물의 전시, 설치 또는 수리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판매인 구내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물을 전시, 설치 또는 수리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5. 판매인 등이 생산물을 공급, 판매하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상 수행하여야 하는 검사, 조정, 시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안 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6. 판매인 등이 생산물에 상표를 붙이든지 바꾸거나 생산물을 다른 물건의 용기, 부품 또는 성분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판매인 등이 생산물이나 그 생산물의 성분, 부품 또는 생산물의 용기를 구입한 사람 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생산물명 :

판매인 등의 성명:

주소 :

#### 인증기관 마크계약 특별약관

##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인증기관의 확인, 검사, 보증이 부여된 생산물만을 공제가입조건으로 하는 공제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이 약관상의 인증기관이라 함은 정부기관의 승인을 득한 기관에 한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은 손해)

보험회사는 손해의 원인을 불문하고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생산물로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인격침해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공제(공제조합용)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 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우 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또는 무고
- 2. 출판물이나 구두 기타비방수단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
- 3.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 점유권의 침해

## 제2조(보상하지 않은 손해)

보험회사는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2.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피공제자가 행하거나, 알고 있거나 동의하에 형사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인격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입은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보장개시일 이전에 행하여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 6. 피공제자가 거짓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광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으로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완성품의 제조업자, 부품 또는 중간재 등의 제조업자를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교차책임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증권의 공동피공제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공제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 제1조(적용범위)

- 이 특별약관은 피공제자가 제조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보장 대상은 피공제자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1. "제조물"이란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것으로써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 2. "제조물"은 피공제자가 시공한 작업(완성작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호 및 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않은 결과로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공제자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제조물을 공급한 경우.
- 2. 공제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단, 피공제자가 파산하여 피해자 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보상합니다.

#### 제4조(보장지역)

이 특별약관은 공제사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환율적용 특별약관

# 제1조(환율적용)

조합은 공제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KEB하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한산한 원화로 합니다.

① 공제료 : 청약일 기준

② 추가및환급보험료 : 배서일 기준③ 해지환급공제료 : 해지일 기준④ 분납공제료 : 납입해당일 기준





## 공제료정산 특별약관

## 제1조(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조합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한하여 공제료를 ( )회에 나누어 조합에 납입합니다.

## 제2조(공제료의 분할납부)

- ① 계약자는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분할납부하는 공제료를 납입하고 제2회이후의 분할납부하는 공제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1. 공제기간이 1년인 경우
    - 1) 일시납
    - 2) 2회 분납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공제료의 (50%) 해당액)
      - 제2회 : 청약일 이후 (3개월)이 지나는 날(총 공제료의 (50%) 해당액)
    - 3) 4회 분납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공제료의 (25%) 해당액)
      - 제2회 : 청약일 이후 (2개월)이 지나는 날(총 공제료의 (25%) 해당액)
      - 제3회 : 청약일 이후 (4개월)이 -지나는 날(총 공제료의 (25%) 해당액)
      - 제4회 : 청약일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총 공제료의 (25%) 해당액)
- ② 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위 제1항의 제1회 분할납부하는 공제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조합이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 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때도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공제료를 등을 받을날
보장개시일	을 말하나, 조합이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